

제10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아이스하키리그 대회요강

- 1.대회명: 제10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아이스하키리그
- 2.기 간: 2021년 7월15일(목)~7월18일(일) 4일간
- 3.장 소: 부산 북구 문화빙상센터
- 4.주 최: 부산광역시 아이스하키협회
- 5.주 관: 부산광역시 아이스하키협회
- 6.후 원: 부산광역시 아이스하키협회,부산광역시
- 7.참가지역:부산,창원,대구,서울,강원,포항,충남,경기(8개지역)
- 8.참가팀:부산마리나,동성초등학교,부산레드라이언,서울동천타이거삭스,서울제이콘제이,창원데블스,대구블랙나이츠,강원하이원,경기과천위니아,포항엔젤스,충남터틀스,서울광운타이거삭스,부산브레이커스,jr레드라이언,대구스포츠클럽,서울허리케인,jr.강원하이원,부산킨더래비츠,창원데블스,포항엔젤스,고등부(24개팀)
- 9.참가자격: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선수등록 완료한 선수, 임원

10.대회규정

1)제1조 경기방식

- 조별풀리그방식-(유치부) 15분 전.후반 흘러타임, 휴식없음,패널티(1분)
(초등) 15분3피리어드 흘러타임, 휴식없음,패널티(1분)
(중등) 20분3피리어드 흘러타임, 휴식없음,패널티(1분30초)
(고등) 20분3피리어드 흘러타임, 휴식없음,패널티(1분30초)

※팀간의 득점차가 1점이하일 경우 3피리어드 끝나기 2분전부터 정미타임

※팀간의 득점차가 2점이상일 경우 3피리어드 끝나기 30초부터 정미타임

승자결정방법-무승부가 된 경우 승자결정을 위해 승부샷 3회로 승부를 결정한다.

2)제2조 리그 순위 결정방법

①승점(승3,연장승2,연장패1,패0) ②해당팀 간의 승패(승자승) ③해당팀 간의 득실차

④ 해당팀 간의 총득점 ⑤ 전 경기의 득실차 ⑥전 경기의 총득점

⑦ 반칙이 적은팀 승

3)제3조 경기장

1.양 팀 벤치의 위치는 본부석을 중심으로 전면 좌측 홈(Home)팀
우측 이 어웨이(Away)팀이 된다.

2.대진표 상에는 좌측에 기록된 팀이 홈팀이며, 우측은 어웨이 팀이다.

3.선수 벤치에는 등록된 임원 및 선수 이외에는 입장이 불허 한다.

4.경기장내 (본부석)에는 대회임원 및 경기진행에 직관접 관련이 있는 임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5.경기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주심의 재량에 의해 벤치마이너를 부과할 수 있다.

4)제4조 유니폼

1.헬멧, 유니폼, 팬츠, 스타킹은 반드시 통일 시켜야 한다.

2.마우스가드(권고),넥가드(필수)를 착용하여야한다.

5)제5조 선수 및 임원

1.선수 및 임원은 당해 연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및 각시도협회 등록을 필 한 자로서 참가신청서에 기록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2.한 팀은 총 30명(GK3, 플레이어27명)의 선수를 대회 신청서에 등록할 수 있으나 경기에 출전하는 엔트리는 22명(Gk2, 플레이어 20)으로 제한한다.

3.한 선수가 한 대회에 2개 소속으로 출전 할 수 없다.

6)제 6조 팀

1. 대회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팀은 당해 대회 최하위가 되며, 잔여 경기 및 차기 연도 출전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해당 팀은 당해 경기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부산아이스하키협회에 변상하여야 하며, 관련 임원은 상벌규정에 의하여 엄중 조치 한다. 아울러 경기도중 퇴장하여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서도 이에 준한다.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및 사고로 인하여 경기시간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2.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팀이 대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동 대회는 물론 차기 연도 동 대회 자격을 상실한다.

3. 경기장 질서를 저해하는 자는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 상벌규정에 의하여 엄중 조치한다.

7)제7조 시상

1.단체상

조별우승/준우승/공동3위/페어플레이팀 - 메달(유치부,초등,중등,고등)

8)제8조 기타

1.심판배정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요청한다. 만약 심판배정이 안되었을 경우 부산아이스하키협회에서 결정한다.

2.심판 : 유치부 경기 2심,초등부 경기 2심,중등부 2심, 고등부 2심

3.대진은 변경 될 수 있음.

4.대회기간 중 긴급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